

보도자료

2010년 6월 1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방송채널정책과 김영관과장(2470) 나.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과장(2150)
[보고안건]
가.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과장(2330) 나. 통신정책기획과 정완용과장(2510)

2010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 및 제3항과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지연한 (주)씨제이미디어, (주)엠넷미디어, 케이엠티브이(주), (주)씨제이시스템즈,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알앤엘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9조(과징금 처분) 또는 제108조(과태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법인명	위반내용	부과금액(구분)	비고
(주)씨제이미디어	변경등록 지연 (법인합병)	3천만원(과징금)	최초 위반
(주)엠넷미디어	변경신고 지연 (편성책임자 변경)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변경신고 지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케이엠티브이(주)	변경신고 지연 (편성책임자 변경)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변경신고 지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주)씨제이시스템즈	변경신고 지연 (최다액출자자 변경)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주)씨씨에스충북방송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주)알앤엘바이오		2백5십만원(과태료)	최초 위반

나.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개선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 TV 전자상거래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조적 데이터 방송에 관한 지침」 수정(안)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전]

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디지털전환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아날로그TV 종료일’ 및 ‘저소득층 지원대상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아날로그 TV방송은 2012년 12월 31일(월) 오전 4시에 종료하고, 시범사업지역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시 및 대상 방송국을 정함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종료일시	2010.9.1, 14시	2010.10.6, 14시	2010.11.3, 14시	2011.6.29, 14시
종료대상 방송(보조)국명	KBS현종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군동제2TV 방송보조국 등 7개	KBS금수산제2TV 방송보조국 등 10개	KBS제주제2TV 방송국 등 11개

※ 다만, 시범사업지역의 방송(보조)국 중 KBS-1TV는 미전환자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종료일로부터 30일간 연장 후 종료

-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텔레비전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컨버터(필요시 안테나 포함)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유료방송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전체(85.4만 가구)로 하고, DTV 구매보조를 선택적으로 지원
- 차상위계층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 시청권보장 차원에서 직접수신가구(47.5만가구)에 대해 지원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 '10. 3. 22. 공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시행('10.9.23.)을 대비하여 도매제공(재판매)제도 도입 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첨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도매제공(재판매)제도 도입 준비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토록 함

※ 강화된 내용 : ①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②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③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

□ 시설관리기관제도 도입 준비

-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개정사항

- 법개정으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도매제공대가 등을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및 이통사의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세부기준을 마련
- 회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2/100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매출액의 2/100 이하 :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
5억원 이하 :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

-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 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함(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분담)

-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향후 일정

- '10. 6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0. 6월 중 :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보고
 -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에 대해 문방위 보고 및 동의 필요(문방위 의결 부대조건, '09.12)
- '10. 7월~8월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10. 9월 23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